#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839

발의연월일: 2025. 3. 12.

발 의 자:허종식·노종면·이훈기

유동수 · 정일영 · 서영석

윤종군 • 조계원 • 모경종

김교흥 • 박찬대 • 김동아

박성준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현행법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여야하며,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권역별 '2020년 광역도시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범위 내에서만 가능함.

한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새로 국방・군사시설을 설치하여 이전하는 경우 그 시설을 국가에 기부하면서 기존의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양여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제한구역 내 군부대를 이전하고 양여받은종전 부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여 개발하는 정책을 추진중임.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광역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이 소진되어 군부대를 이전하여도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어려워

이전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

이에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양여받은 일반재산을 개발하는 경우 광역도시계획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의 적용을 제외함으로써 군부대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제12조제3항 신설).

#### 법률 제 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 치단체가 양여받은 국방・군사시설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광역도시계획의 내	용) ①	제12조(광역도시계획의 내용) ①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③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
		량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
		라 지방자치단체가 양여받은
		국방·군사시설을 개발하는 경
		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